

# 남경기노회 운영규칙(運營規則)

##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예장합동총회'라 함) 남경기노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구역): 본회의 관할구역은 예장합동총회에서 정하여 준 지역(과천, 의왕, 안양, 군포)으로 한다.

단, 행정구역 변경 시 변경 이전의 각시찰 경내에 속한 지(支)교회는 기존 시찰 내에 그대로 두기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예장합동총회의 헌법(이하 '헌법'이라 함)을 준수하고 교리를 보존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성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회원(會員) 및 총대(總代)

제4조(회원): 본회 회원은 헌법교회정치 제10장 제3조, 제4조 및 제15장 제13조에 준하며 각호와 같다.

- 헌법교회정치 제10장 제3조: 회원의 자격은 정년 이전의 시무목사와 원로목사,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받은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 헌법교회정치 제10장 제4조: 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 헌법교회정치 제15장 제13조: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예장합동총회에 속한 본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원에서 수업한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교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

## 제3장 임원(任員) 및 임무(任務)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                   |                         |
|-------------------|-------------------------|
| 1. 회장(목사) - 1인    | 2. 부회장 - 2인(목사, 장로 각1인) |
| 3. 서기(목사) - 1인    | 4. 부서기(목사) - 1인         |
| 5. 회의록서기(목사) - 1인 | 6. 회의록부서기(목사) - 1인      |
| 7. 회계(장로) - 1인    | 8. 부회계(장로) - 1인         |

제6조(임무): 본회의 임원임무는 각호와 같다.

-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노회를 대표한다.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목사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서기: 본회로 수신되는 문서와 합법적으로 제출된 헌의청원보고, 문의, 이명, 소송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로 전달한다.
  - 모든 서류 및 인장, 고토를 보관하며,
  - 회의 결의서를 인쇄하여 지교회로 보내며,
  - 총대 천서를 검사하여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 기타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록서기: 본회의 회기회의록을 작성하고 노회 폐회 후 20일 이내에 정서(正書)하여 서기에게 전달한다.  
단, 회기 시 회의록채택은 본회의 허락(許諾)이 있으면 임원회에 전권을 일임할 수 있다.
- 회의록부서기: 회의록서기를 보좌하며 본회의 회기 폐회 전에 회의 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서기와 상의한 후 서기에게 전달하며 회의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계: 본회가 결의한 대로 재정출납 업무를 관장하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분류, 보관하고 본회의 회기 전에 감사를 마친 후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회계는 재정부 부원을 겸할 수 있다.
-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격): 본회의 임원 자격은 각호와 같다.

- 회장: 목사장립 10년 이상, 본회가입(이명이래) 5년 이상인 위임목사로 한다.
- 부회장: 1) 목사부회장의 경우 목사장립 9년 이상, 본회가입(이명이래) 5년 이상인 위임목사로 한다.  
2) 장로부회장은 본회에서 장립한지 5년 이상 본회가입(이명이래) 4년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 서기: 목사장립 7년 이상, 본회가입(이명이래) 4년 이상인 위임, 시무목사로 한다.
- 부서기: 목사장립 7년 이상, 본회가입(이명이래) 4년 이상인 위임, 시무목사로 한다.
- 회의록서기: 목사장립 7년 이상, 본회가입(이명이래) 4년 이상인 위임, 시무목사로 한다.
- 회의록부서기: 목사장립 7년 이상, 본회가입(이명이래) 4년 이상인 위임, 시무목사로 한다.
- 회계: 장로장립 5년 이상, 본회가입 4년 이상인 장로총대로 한다.
- 부회계: 장로장 5년 본회가입 4년 이상인 장로총대로 한다.
- 임원자격에 준하는 자가 미 총족 시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선례에 준하되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는다.

## 제4장 임원선거(任員選舉) 및 임기(任期)

제8조(임원선거): 본회의 임원선거는 각호와 같다.

- 모든 임원은 4월 정기회에서 각각 투표하여 선정하되 회장과 부회장 서기는 총 투표수의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이상이 없을 시는 3차 투표에서 최고득점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종다수(從多數)로 한다. 단, 최고득점자가 다수일 때는 2차 투표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다수일 때는 장립순서대로 한다.
- 선거위원은 회장의 지시로 7명으로 하되 목사4인 장로3인을 기준으로 각 시찰회에서 선정한다. 투개표위원(投開票委員)중 목사선임이 위원장이 되고 장로선임이 서기가 된다.
- 본회의 동의와 허락이 있을 시 회장이 자벽(自辟)하여 전형위원들을 세울 수 있고 전형위원들의 추천과 본회의 허락을 통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9조(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각호와 같다.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매년 4월 정기회에서 선출한다.
- 본회의 결원된 임원 보선은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결원된 임원만 보선한다.

제10조(총회총대선거): 본회의 총회 총대 선거는 각호와 같다.

- 매년 4월 정기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은 자동 총대가 되며, 그 외 목사 총대는 위임목사로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최다점자로 하고 부총대는 차점자 순으로 한다.  
단, 본회의 결의로 고정 총대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전형위원이 천거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을 수 있다.
- 장로 총대는 최다점자 순으로 하고 부총대는 차점자 순으로 한다.
- 총회 총대는 10월 정기회에서 총회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파송이사선거): 본회의 파송이사선거는 각호와 같다.

- 교단 신학대학교와 기독신문사, 총회실행위원회(총대5회 이상 참여자), 미자립위원회, 총회선교회에 이사를 파송하되 무기명 투표하여 종다수(從多數)로 한다.  
단, 1) 최고득점자가 다수일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다수일 때는 장립순서대로 한다.  
2) 기독신문, 미자립위원회의 이사는 회장이 당연직이다.
- 유고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본회의 결의로 전형위원회에서 천거하여 본 회의 허락을 받을 수 있다.

## 제5장 상비부(常備部), 시찰회(視察會), 위원회(委員會)

제12조(각상비부조직): 본회의 각 상비부조직은 각호와 같다.

- 각 상비부 부원은 10명까지 할 수 있으되 14부를 둔다. 단, 각 상비부와 부원은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각 상비부는 다음과 같다.

1) 헌의부	2) 정치부	3) 고시부	4) 교육부	5) 재정부	6) 전도부
7) 면려부	8) 규칙부	9) 사회복지부	10) 군,경목부	11) 선교부	12) 당회록검사부
13) 감사부	14) 공천부				
- 선출방법과 자격
  - 상비부원은 본회의 매년 4월 정기회 시 공천위원이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각부소집은 1년조 선임자가 하되 부장은 위임목사가 한다.
  - 임기 만료된 상비부원은 동일부서에 재임하지 못한다.
  - 본회 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을 겸할 수 없다.
  - 정치부원은 본회 임원을 역임한 위임목사와 장로장립 7년 이상 된 총대로 한다.
  - 정치부와 고시부는 겸임할 수 없으며, 각 상비부원은 정회원으로 공천하여야 한다.
- 상비부의 임무
  - 헌의부: 헌의부는 합법적인 서류를 서기에게 전달받아 분류한 후 본회의 회기 시 허락을 얻어 해당부서에 전한다.
  - 정치부: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사항과 본회가 맡긴 사항을 결의하여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고시부: 본회 내 각종고시를 시행하여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부원은 목사로 한다).
  - 교육부: 모든 교육을 연구하여 지도하되 본회산하 주일학교연합회를 지도육성 관리하고, 교육에 관한 사업을 장리(掌理)하며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재정부: 본회의 재정(수입, 지출)을 편성하며, 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전도부: 전도에 관한 사항을 장리(掌理)하되 본회 산하의 기관인 남, 여전도회를 지도육성하며 감독하고 본 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면려부: 학생, 청년, 장년연합회를 지도육성 및 감독하며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규칙부: 규칙에 관한 일을 장리(掌理)하며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사회복지부: 구제 및 후생사업일체를 장리(掌理)하며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군, 경목부: 군,경목사업에 관한사항을 장리(掌理)하며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선교부: 선교에 관한 일을 장리(掌理)하여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12) 당회록검사부: 지교회의 당회록도 4월 정기회 시 검사하며 지도 육성한다.
- 13) 감사부: 본회 및 산하 각 기관의 재정과 회계문서를 감사하여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14) 공천부 : 각부의 부원을 공천하여 상비부를 조직하고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제13조(시찰회 운영):** 본회의 시찰회 운영은 각호와 같다.

1. 목적: 각 시찰회는 헌법교회정치 제10장제6조제6.9.10.11항의 규정에 따라 경내 각 교회의 신령과 유익을 위하여, 지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각종사안에 대하여 협의하며 지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회원: 각 시찰회의 회원은 헌법교회정치 제10장제6조제9항 및 본 시찰회 소속 목사와 장로로 한다.
3. 의무: 본회에서 결의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 임원: 각 시찰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둘 수 있으며, 매년 3월 시찰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다. 단, 시찰장은 위임목사여야 하며, 시찰서기는 시찰형편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5. 보고: 정기회 20일 전까지 시찰보고서와 교회 상황보고서를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찰을 경유하는 각종 서류 일체도 동일하다.

#### **제14조(특별위원회):** 본회의 특별위원회는 각호와 같이 둘 수 있다.

1. 수습위원회: 지교회간의 분쟁과 교인간의 어려운 사건을 자체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 할 때 이를 수습하고 본회에 보고하여 본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하게 한다.
2. 자문위원회: 지교회 안에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지교회의 요청에 따라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본회가 택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협조하고 보고하게 한다.
3. 조사위원회: 본회와 지교회에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본회가 허락한 사건의 전권을 맡겨 조사보고토록 한다.
4. 재판위원회: 본회 안에 소송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본회 재판국 규례에 의거하여 재판국을 설치하고 재판결과를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5. 특별위원회 위원선정: 특별위원회 위원선정은 본회의 회기 시 투표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회원의 동의와 허락이 있으면 회장이 자벽(自辟)할 수 있고, 본회가 결정한다.
6. 특별위원회 위원 수(數): 재판국의 국원 수는 헌법교회권징 제13장 제117조에 준하며, 기타 특별위원회는 훨수로 정하되 그 중 3분의 2는 목사로 한다.
7. 특별위원회의 범위: 재판위원회 외에는 권징권(재판권)이 없으므로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조사 이상의 범위를 넘지 말아야 한다.

### **제6장 회의(會議)**

#### **제15조(정기회):** 본회의 정기회는 각호와 같다.

1. 헌법교회정치 제10장제2.3.4.5.6조에 준한다.
2. 1년 2회로 하되 4월 첫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와 10월 첫 주일 후 화요일 오전10 시로 한다.  
단, 정기회 기간이 고난주간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익일(翌日) 또는 익주(翌週)로 연기할 수 있다.
3. 4월 정기회에서는 임원선거 및 각 부서를 새로 구성 조직하고 예산결산을 하며 정책을 수립한다.
4. 10월 정기회에서는 목사장립 및 강도사 인허식을 거행하고 기타사무를 처리한다.
5. 임원회 회기준비: 정기회 16일전 회의 장소에서 회기준비모임을 갖는다.
6. 상비부회의
  - 1) 헌의부: 정기회 15일전\_회의 장소에 모여 서기에게 전달받은 문건(文件)을 관장(管掌)한다.
  - 2) 정치부: 정기회 15일전 회의 장소에 모여 헌의부로부터 배정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한다.
  - 3) 고시부: 정기회 15일전 회의 장소에 모여 각종고시를 실시한다.
  - 4) 감사부: 정기회 15일전 회의 장소에 모여 감사한다.
  - 5) 공천부: 정기회 15일전 회의 장소에 모여 상비부 공천을 완료한다.
  - 6) 모임의신축성: 상비부모임은 여건(與件)에 따라 탄력성 있게 같은 날 오전과 오후로 모일 수 있다.
7. 위원의 선정
  - 1) 통계위원: 서기, 부서기는 당연직 통계위원이 된다. 1인은 회장이 자벽(自辟)한다.
  - 2) 천서(총대자격심사)위원: 회장과 서기, 부서기로 한다.
  - 3) 절차위원: 본회의 모든 임원은 회의순서위원이 된다.
  - 4) 광고, 지시(안내)위원: 회장이 각 1인을 지명한다.
  - 5) 전형위원: 위임목사 3인, 증경장로부회장 2인으로 한다.
8. 위원의 임무
  - 1) 통계위원: 각 교회 현황을 보고 받아 통계를 작성하고 총회총대 투표 전 당회수와 그 현황을 보고한다.
  - 2) 천서(총대자격심사)위원: 회의순서를 검사하여 회원명부를 작성한다.
  - 3) 회의순서위원: 회의순서를 작성하여 개회 초에 보고한다.
  - 4) 광고, 지시 절차위원: 광고 및 지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회의질서를 관장한다.
  - 5) 전형위원: 본회가 맡기는 의안(議案)을 협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6) 공천위원: 상비부 공천위원은 각 시찰장이며, 1,2년 조 결원 및 3년 조의 상비부원을 조직하여 보고한다.

#### **제16조(임시회):** 본회의 필요시나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헌법교회정치 제10장제9조에 의거하여 임원회의 의결로 소집하되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 후 폐회한다.

#### **제17조(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각호와 같다.

1. 헌법교회정치 제10장제9조에 준하며, 회장의 필요시 혹은 상회의 지시가 있을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2. 본회에서 위임한 일만 처리하여 보관한다.

**제18조(특별위원회):** 본회의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건이 있을 시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장 재정(財政)

**제19조(노회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지교회가 부담하는 상회비와 기타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정기회 이후 다음해 4월 정기회 전까지로 한다.
3. 각 지 교회는 상회비를 매월 회계에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회비를 본회기 개회 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회원과 총대호명은 하되 언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일체 중지 되고 각종 청원서류를 받지 않고 증명서 발급도 중지된다.
4. 지교회의 상회비 미납금은 이월금에 포함하여 회계에게 납부해야만 한다.
5. 상회비 환불시 중지된 모든 건은 자동 회복된다(본회규칙 제15조제3항).
6. 가입(이적)교회의 상회비는 본회(임시회 포함)에 가입된 회기부터 적용하되 상회비는 임원회에서 책정하여 통보해 준다.(당 해년도 회계기간만 한시적 적용)
7. 회계는 재정 상황을 정기회전에 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장 고시(考試)

**제20조(목사고시):** 본회의 목사고시는 각호와 같다.

1.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총회에서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자로서 헌법교회정치 제14장제1조에 의거한자로 한다.
2. 고시과목은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헌법교회정치 제10장제6조제7항) 등이다.

**제21조(목사후보생고시):** 본회의 목사후보생고시는 각호와 같다.

1.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자로서 당회장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계속추천을 원할시, 고시 없이 당회장의 '신학계속 추천청원'으로 본회가 발급한다).
2. 고시과목은 성경, 영어, 상식, 면접 등이다.

**제22조(전도사고시):** 본회의 전도사고시는 각호와 같다.

1. 헌법교회정치 제3장제3조제1항제2목에 의거하여 독실한 신앙으로 전도에 사명감이 있고 상당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회장이 추천하는 남, 여에게 고시한 후 자격을 부여한다.
2. 고시과목은 성경, 영어, 정치, 예배모범, 상식, 면접 등이다.

**제23조(장로고시):** 본회의 장로고시는 각호와 같다.

1. 장로고시는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투표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 피택 된 자로 한다.
2. 고시과목은 성경, 소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면접 등이다. 단, 무임장로(본 교단)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3. 장로고시를 청원할 시 당회는 공동의회의 상황(공동의회 일자, 총투표인수, 찬성표수)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제출해야한다.
4. 장로선택 허락을 받고 1회기동안 지 교회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나 연기청원을 하면 1회기만 허락 한다.

## 제9장 임직(任職)

**제24조(임직식):** 본회의 임직식은 각호와 같다.

1. 목사임직식과 강도사인허식의 예배순서와 안수위원선정은 절차위원회에 일임한다.
2. 목사로 임직할 때 회장은 먼저 안수 받을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위원과 함께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 후, 가운(gown)착의식과 함께 악수례를 행한다(헌법교회정치 제15장제10조제2항).

**제25조(목사임직 및 위임):** 본회의 목사임직 및 위임은 각호와 같다.

1. 목사임직식은 헌법 교회정치 제15장제1조에서 제10조에 의거하여 본회가 고시 후에 시행한다.
2. 목사임직 시에는 반드시 부인도 동석함이 보기 좋다.
3. 목사위임은 노회가 주체가 되어 거행하는 것이므로 노회장이 위임국장이 되어 거행한다.(정치문답조례 제584 문).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직전 노회장이나 부노회장이 대신 할 수 있으며, 위임국장은 위임목사 (제103회 총회결의)여야 한다.
4. 본회에서 목사 위임허락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위임식을 거행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당회가 1회 연장 청원을 하여 본회의 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강도사인허):** 본회의 강도사 인허식은 총회로부터 강도사고시 합격증이 접수되면 헌법교회정치 제14장 제5조에 의거하여 그 회기 내에 시행한다.

**제27조(장로임직):** 본회의 장로임직은 각호와 같다.

1. 지교회가 장로를 임직하려면 헌법교회정치 제5장제3조에 의거하여 교회의 선택청원, 노회의 허락, 교회의 피택, 고시청원, 본회고시, 고시합격 후 교회의 임직 등의 순서로 시행한다.
2. 교단 내 타 교회에서 이명 온 장로를 시무하게 하려면 교회의 인준 청원, 본회의 허락, 교회의 피택 후 취임하게 한다.
3. 지교회가 타 교단에서 전입 한 장로를 시무하게 하려면 교회의 인준 청원, 본회의 허락, 교회의 피택, 본회 정치부의 면접을 거쳐 취임하게 한다.
4. 타 교단에서 목사가 교회와 함께 본회에 가입 할 경우 목사는 헌법교회정치 제15장제13조에 의거하여 준회원으로 받고 장로는 본회 정치부의 면접을 거쳐 장로로 취임하게 한다.
5. 장로고시에 합격한 자는 6개월 안에 임직하여야 하나 지교회의 사정이 있을 경우 1회기 재연장 청월을 하여 본회의 재(再)허락을 받아야한다(취임건도 동일하다).

## 제10장 사무장정(事務章程) 및 시행세칙(施行細則)

**제28조:** 본회에 상정하는 모든 서류는(소송 및 진정) 정기회 개회 20일 전까지 하되 시찰회를 경유하여 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타 노회 목사가 본회에 위임 청빙이 있을 시는 정기회 1개월 전에 해야 한다.  
(헌법 교회정치 제16장제2조). 그리고 긴급 동의안을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7인 이상 서명을 받아 개회 후 2시간 이내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장로고시 응시자는 총회 성경통신과를 출업해야 한다.

**제30조:** 본회에 참석하는 총대 장로는 매년 4월 정기회 개회 20일 전 총대천서를 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목사나 전도사의 자격고시를 청원할 경우 당회장의 추천서와 이력서를, 강도사의 인허를 청원할 경우에는 당회장의 추천서와 고시합격증과 이력서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정기회 2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교회조직허락, 장로증원허락도 다른 경우와 같이 1회기를 경과 하면 그 효력이 자동 정지된다.  
단, 사정이 있는 경우 본회에 통보하고 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본회 서식 청원서에 요구하는 첨부된 서류 일체로 하되 인허, 고시, 청빙에 대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강도사인허청원

- 1) 본인의 청원서-1통
- 2) 당회장추천서-1통
- 3) 강도사고시합격증 사본-1통
- 4) 이력서-1통
- 5)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각1통

### 2. 강도사고시청원

- 1) 본인청원서-1통
- 2) 당회장추천서-1통
- 3) 신학대학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1통

### 3. 목사고시청원

- 1) 본인청원서-1통
- 2) 강도사인허증 사본-1통
- 3) 당회장청원서 및 추천서-1통
- 4) 청빙서-1통
- 5) 이력서-1통
- 6)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7) 주민등록등본- 1통

### 4. 목사청빙

- 1) 당회장청원서-3통
- 2) 공동의회회의록사본-3통
- 3) 이력서-3통
- 4) 청빙서-3통
- 5)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각 3통

### 5. 목사후보생 고시청원(전도사 고시)

- 1) 당회장추천서-1통
- 2) 본인청원서-1통
-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1통
- 4) 전도사 또는 신학지원동기서 1통(200자 원고지 5매)
- 5) 이력서-1통(세례년도와 교회 명기할 것)

- 6)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각 1통  
6. 헌법 교회정치 제15장제13조에 해당한 목사 가입청원  
1) 이력서-1통  
2) 노회소속목사 2인 이상 추천서-1통  
3) 신학교졸업증명서-1통  
4) 목사안수증명서-1통  
5)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각1통

본회는 교회와 목사를 받되 목사는 헌법에 정한 신학교육을 받아 정식회원의 자격을 얻을 때까지 해 교회 목회는 종전대로 계속하되 준회원으로 별도명부에 입적한다. 비총대라도 상비부원이 될 수 있으니 (총회결의 제21회) 부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되 임원은 불가하다.

**제34조:** 본회 지교회는 교회통계표(敎會統計表)를 예장합동총회에 제출해야 한다(총회홈페이지 참조).

**제35조:** 본회 회원이 회집 불참 시 서기에게 정 회기 당일 전까지 흠석계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도 가능하며 작성한 흠석계 서식을 활용해서 보내는 것이 편(便)하다.)

**제36조:** 목사 후보생 및 전도사 고시청원은 고시부에서 그 적성(신상)을 심사하고 신학계속청원은 교육부에서 주관한다.

**제37조:**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은 헌법교회정치 제4장제4조제2항에 준한다.

**제38조:**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당회가 없으므로 치리권은 없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성직권만 있다.  
하지만 노회가 의결하여 당회권(치리권)을 주어 당회 구실(쪽당회)을 하게 할 수 있으나 기간은 시무목사의 시무기간과 동일하다. 시무목사가 연장청원을 하면 당회권도 그대로 유지되지만(헌법 교회정치 제15장제12조제1항, 제4장제4조제2항) 연장청원을 하지 않으면 무임목사가 된다.  
연장청원은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면 된다(총회 결의 101회).

**제39조:** 미조직교회의 부목사청빙은 헌법교회정치 제4조제3항에 위배되므로 불가하다.  
하지만 교육목사도 시무목사이니 미조직교회가 청빙하여 시무사역을 하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미조직교회에서도 강도사를 임시(시무)목사로 청빙할 때 안수하여 청빙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기 때문이다(총회결의 제47회). 또한, 타 회에 소속한 자를 청빙했을 시 1년 이내에 이명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헌법교회권징 제11장제109조).

**제40조:** 본회 위임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지교회를 떠나 1년 이상 흠근(欠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헌법교회정치제4장제4조제1항).

**제41조:** 교인이 없거나 예배의식이 정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지교회는 헌법교회정치제2장제1.2.3.4조, 제7장, 제10장제3조와 헌법적규칙, 예배모범에 정식위배(違背)는 위장(偽裝)교회이므로 해당 시찰위원회 결의로 본회에 폐 교회청원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은 무임목사가 된다.

**제42조:** 원로목사의 추대조건은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시무'를 충족시켜야하며, 지교회의 공동의회의결을 거쳐 노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원로목사는 명예직이므로 언권만 있다(헌법교회정치 제4장4조제4항).

**제43조:** 본회가 의결하여 지교회에 파송하는 모든 당회장은 위임목사여야 한다(총회 제103회 결의).  
파송 받는 당회장의 종류는 헌법교회정치 제9장제3.4조에 준하며, 호칭은 임시당회장으로 통칭(通稱)하고 있다.

**제44조:** 시찰회는 지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것을 본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하는 회(會)이니 매년 일정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당(可當)하다(헌법교회정치 제10장제6조제9항). 지급기준은 교회수와 상회비에 비례하는 것이 편(便)하다.

**제45조:** 각 상비부 및 위원회, 시찰회와 관계기관 파송이사 등은 정기회에 보고할 문서를 유인물로 작성하여 정기회 15일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서기는 정기노회 한 달 전에 정치부, 교육부, 고시부에 관련된 청원 건을 통보하고, 개회 15일 전까지 접수 된 각종 문서들을 취합하여 임원회에서 확정한 회순과 함께 의사록을 만들고 그것을 본회의 시작까지 배부하도록 한다.

**제47조:** 본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議案)은 당회장, 상비부장, 시찰회, 위원회 명의로만 할 수 있으며, 임원회는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본회에 의안을 만들어 올릴 수 없다.

## 제11장 부칙(附則)

제48조(수정과개정): 본회의규칙수정과 개정은 각호와 같다.

1. 규칙을 수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회원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찬성으로 수정 및 개정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2. 규칙의 수정 및 개정의 가결은 정기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49조(규칙미비점): 본회의 규칙에 대한 미비점은 총회의 헌법과 만국통상법(萬國通常法)에 준한다.

제50조(규칙효력): 본회의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 제11장제50개조)

주후 2002년 7월 9일 통과

주후 2012년 10월 9일 개정

주후 2021년 4월 6일 수정